

붙임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편의제공	면접시험 편의제공	증빙서류 (원본 각1부)
지 체 장애인	상지	공통사항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별도 시험실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공통사항	·공통사항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사항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별도 시험실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뇌병변 장애인	공통사항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별도 시험실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공통사항	·시험시간 연장 ·공통사항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시 각 장애인	공통사항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공통사항	·공통사항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청 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시험시간 연장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임신부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일시적 신체장애				·의사진단서

※ 기타 장애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지원 예정

※ 장애인증명서로 해당 여부 파악이 어려울 경우, 의사 진단서 등 추가 제출 요청 예정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임신부의 경우「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 발급일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신청 하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예 시 ※①~③ 반드시 기재
시 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